

(문의)

살균소독제를 유럽(EU)에 수출 하고 싶은데 EU에서는 어떻게 규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코로나 바이러스

현지 EU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업계의 제품 심사 및 승인을 돕기 위해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규제(Enforcement Policy) 관련 가이드(guidance for manufacturers)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European Commission에서 안내하고 있는 용도별 제품분류와 제품분류에 따른 규제 및 요구사항, 제품이 분류되는 요소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 Coronavirus: Commission issues questions and answers to help increase production of safe medical supplies

: Guidances for manufacturers 다운로드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558

또한 현재 European Commission은 마스크, 장갑, 가운을 비롯한 의료기기(medical supplies) 관련 EN 규격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규격은 저작권 때문에 구매 후 열람할 수 있으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기 공급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 European Commission > Coronavirus: European standards for medical supplies made freely available to facilitate increase of product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502

제품 분류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수출 시 EU규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참고 EU > EU member countries in brief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member-countries_en

살균소독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경계성 제품”(borderline products)입니다.

제품 용도 및 사양에 따라 제품의 분류와 그 규제가 다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제품도 포장, 마케팅, 효능 표시 등으로 인해 그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품이 어떠한 항목으로 분류되어도 이에 해당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 하기 전에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살균소독제는 “살균”의 기능을 가지므로 보통 살균제(biocide)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이 특정 의료기기나 의료장비의 멸균 소독용일 경우 의료기기 부속제품(accessory)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분류는 단순히 “소독제”라는 품목을 일괄 분류하여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각 제품별(case-by-case basis) 특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해당제품의 주요 첫 번째 기능(primary function), 표현방식(presentation), 효능 표시(claims)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살균제 제품이 살균(kill germs), 소독(disinfect) 용도로 쓰인다면 살균제(biocide)에 해당합니다. 살균제 등록이 필요하며 CE마킹 대상이 아닙니다.

2) 의료기기 제품이 사용법(instruction for use)에 따라 사용 전에 반드시 소독되어(disinfected)야 하는 의료기기(medical device)의 소독(disinfection)을 위해 특수 고안된 경우 의료기기 부착제품(accessory)에 해당하여 의료기기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기 규정을 준수한 후 CE마킹이 가능합니다.

- 예시) example of accessories of medical devices

Disinfectants specifically intended for use with medical devices (e.g. endoscopes)

3) 다용도 소독제

다용도 소독제(multipurpose disinfectants or sterilisation agents)는 의료기기지침(MDD)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살균제 지침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소독제(General disinfectants)는 살균제 지침(Directive 98/8/EC)에 해당하며, 해당 지침은 현재 살균제규정(Regulation EU No.528/2012)로 대체되었습니다.

※ 효능 표시(claims)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효능 표시(claims)는 제품의 주요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해 살균제, 의료기기 등 제품의 카테고리를 정(define)하게 됩니다.

※ 소독제에 CE 인증을 받은 업체도 있던데?

CE인증을 받은 타사 소독제를 검색한 결과 몇 가지 제품이 검색되었습니다.

- 휴온스메디케어, 의료기구 소독제 '오피크린' 유럽 CE 인증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325_0000598139

해당제품의 경우 의료기기 전용 소독제로 멸균장비에 사용되는 소독제입니다. 제품 특성은 “미생물, 유기물 등으로 인해 고도로 오염된 기구나 피하조직, 점막에 직접 적용되는 기구의 화학적 소독과 B형 간염 바이러스 오염이 예상되는 기구까지 소독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시경기구 소독제에 대해 CE인증을 받은 업체도 검색되었습니다.

- 성광제약, 소독제 '오피덱스' 유럽 CE인증 획득

<https://www.ajunews.com/view/20151110090034118>

그 외에 다른 업체가 손소독제에 대하여 CE인증을 받았음을 홍보하는 경우가 검색되었는데 해당 업체는 소독제를 만드는 기계에 대한 CE인증이지 소독제 제품에 대한 CE인증이 아니었으며 손소독제에 대해 화장품 등록(CPNP)을 한 것에 대하여 CE인증으로 잘못 표기/오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출처

- EU > Manual on Borderline and Classification in the Community Regulatory Framework for Medical devices 2019년 5월 (50쪽 확인)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cd=1&cad=rja&uq=1&ved=2ahUKEw0-LQ-Nr0h1VvY4hISKCMVFAlegQIAAB&url=http%3A%2Fec.europa.eu%2Fdocuments%2Fdocuments%2F5562%2Fattachment%2F1%2Ftranslation%2Fen%2Ftranslation%2Fpdf&usq=AcVjwCg2A0meK310-085Ch&oeq=0>

- EU > Medical devices: Guidance document - Classification of medical devices (48쪽 확인)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cd=1&cad=rja&uq=1&ved=2ahUKEw0-LQ-Nr0h1VvY4hISKCMVFAlegQIAAB&url=http%3A%2Fec.europa.eu%2Fdocuments%2Fdocuments%2F5562%2Fattachment%2F1%2Ftranslation%2Fen%2Ftranslation%2Fpdf&usq=AcVjwCg2A0meK310-085Ch&oeq=0>

- Obelis > Biocide or Medical Device - the borderline cases

<https://www.obelis.net/blog/biocide-or-medical-device-the-borderline-cases/>

- ANSM > Status of disinfectants used in the medical sector

(Borderline with biocidal products PT2 and medical devices)

https://ansm.sante.fr/var/ansm_site/storage/original/application/28ecbe2dcb28c1784282c506bc49fadd.pdf

- A3P > The European approach to disinfectant qualification

<https://a3p.org/the-european-approach-to-disinfectant-qualification-la-vague-52/>

살균제

▶ EU 살균제 규정 BPR: EU Biocides Product Regulation (EU) No 528/2012

살균제를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BPR규제와 관련 국가별 규제(any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를 준수해야 합니다. EU는 2013년 9월 1일부로 살생물 제품(유해한 유기생물을 물리·화학 또는 생물학적으로 제어·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기존 살생물 제품 관리지침인 BPD(Biocidal Products Directive)를 강화·개정한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을 시행하였습니다.

- BPR 살균제 규정 Regulation (EU) No 528/20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2R0528>

* 참고

- ela.or.kr >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럽연합 법제에 관한 연구, 한민지, 송동수 (다운로드 필요)

[illegible]

- 환경부 > 국내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 방안 연구 (2014)

<http://webbook.me.go.kr/DLi-File/091/023/009/5594362.pdf>

▶ EU 살균제 규정 개요

EU 살균제 규정(BPR)은 소독제(disinfectants), 해충관리제품(pest control products), 방부제(preservatives), 쥐약(rodenticides), 방오도료(anti-fouling paints), 시체방부처리제(embalming fluids) 등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의 제품을 다룹니다.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으로 해당규정은 EU 회원국에 바로 적용되며, 노르웨이와 스위스에도 시행됩니다.

- 제품유형별 미승인 활성물질에 대한 원칙적 사용 금지
- 살생물 제품으로 처리된 완제품 규제, 대상 제품유형 확대 등 BPR 적용 범위 확대
- 살생물 제품의 통합 허가, 저우려 살생물 제품의 간이허가 등 허가절차 간소화
- 나노물질 표시 및 포장 규정 도입 - 2015년 9월 1일부터 승인 또는 허가되지 않은 활성물질 및 살생물 제품은 시장출시 금지

BPR 규제와, 활성물질 승인(기존 활성물질, 새로운 활성물질)에 대한 정보는 ECHA(European Chemical Agency)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CHA > Understanding BPR

<https://echa.europa.eu/regulations/biocidal-products-regulation/understanding-bpr>

- ECHA > BPR Legislation

<https://echa.europa.eu/regulations/biocidal-products-regulation/legislation>

- ECHA > Approval of active substances

<https://echa.europa.eu/regulations/biocidal-products-regulation/approval-of-active-substances>

- ECHA > Guidance on the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15623299/bpr_guidance_vol_v_dbp_en.pdf/a57a2905-923a-5aa3-ea88-45f5c5503daf

- ECHA > Guidance on BPR

<https://echa.europa.eu/guidance-documents/guidance-on-biocides-legislation?panel=vol5partB#vol5partB>

※ Product Type (PT)

EU 살균제규정은 다양한 용도에 따른 광범위한 소독/살균/방충/방오/방부/기피 제품을 규제하는데 제품 유형(Product Type, 이하 PT)별로 분류하여 차등 규제합니다.

본 규정은 살균제품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소독제(disinfectants), 방부제(preservatives), 해충관리제품(pest control products) 및 특수 살균제(specialty biocides) 등의 22가지 살균제품유형(biocidal PTs)을 분류하고 해당 제품유형(PT)을 포함하는 네 개의 주 그룹(Main grou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유형(PT)별 허용된 활성성분과 제한치 등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으므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해당 하는 제품유형(PT)을 파악하고 해당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이 한 제품유형(PT)으로 승인되었다면 다른 제품유형(PT)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제품유형(PT)으로 추가 등록(registration)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유형2(PT2)로 등록된 표면소독제(hard surface disinfectant)를 손소독제(hand sanitiser)로 사용하려면 제품유형1(PT1)로 별도 등록(separate registration)이 필요합니다.

제품유형(PT) 그룹은 EU 살균제규정(BPR) 부속서V(Annex 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CHA > Product-types

<https://echa.europa.eu/regulations/biocidal-products-regulation/product-types>

▶ BPR 승인절차 (BPR approval process)

EU BPR 살균제품 승인(biocidal product authorisation)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해당 Product Type (PT)에 따라 살균제품(BP)에 사용을 위한 활성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승인된(approved) 활성물질(active substances)로 구성되거나 이를 함유 또는 생성하는 각각의 살균제품(BP)은 해당 제품유형(PT)에 따라 승인을 위해 검토됩니다.

- 살균제품등록: ECHA > R4BP 3 - Register for Biocidal Products

<https://echa.europa.eu/support/dossier-submission-tools/r4bp>

상세사항은 EU BPR Review Regulation EU 1062/2014의 부속서II(Annex I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gulation (EU) No 1062/201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4R1062>

활성성분이 승인되면, EU 살균제규정(BPR)의 Article 9: Approved List of Active Substances (Union

List)에 등재(listed)됩니다.

제품의 활성성분이 모두 Union List에 등록되어 있고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 간소화절차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제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CHA > Simplified authorisation

<https://echa.europa.eu/regulations/biocidal-products-regulation/authorisation-of-biocidal-products/simplified-authorisation>

- ECHA > Simplified authorisation > Application procedure

<https://echa.europa.eu/regulations/biocidal-products-regulation/authorisation-of-biocidal-products/simplified-authorisation/application-procedure>

- ECHA > R4BP 3 > Simplified authorisation of biocidal products

<https://echa.europa.eu/support/dossier-submission-tools/r4bp/simplified-authorisation-biocidal-products>

- ECHA > PRACTICAL GUIDE ON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 Simplified authorisation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21742587/pg_on_bpr_10_simplified_authorisation_en.pdf

- CONUSBAT > A Simplified Biocidal Product Authorization

http://www.conusbat.com/medien/1478699684_reviewing_regulatory_approaches_08.11.16.pdf

아래 출처링크에서 첨부 자료-분석보고서 EU BPR(살생물제품규제) 주요 의무사항 및 이행절차를 확인하여 주십시오.(로그인필요)

- 국제 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311-15-057

https://www.compass.or.kr/report.do?command=view&selected_key=00683

▶ 유의사항

ECHA에서 발행하는 Article 95 list에 활성물질 및 살균제품을 시판하는 공급업자(supplier) 혹은 제조자(manufacturer) 또는 수입업자(importer)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 Article 95: List of active substances and suppliers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21742587/pg_on_bpr_4_art95_list_active_substances_en.pdf

- ECHA > Information on biocides > List of active substances and suppliers

<https://echa.europa.eu/information-on-chemicals/active-substance-suppliers>

모든 활성물질이 검토되어 승인 활성물질 Union List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별 등록제도(local country registrations)에서 BPR로 전환하는 유예기간(transitional phases)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환협의사항(transitional arrangements)이 회원국마다 다를 뿐 아니라, 각 제품그룹에 따라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특정국가의 규제에 따라 등록을 할 경우는 해당국에서만 판매가능하며 BPR에 따라 Union authorisation을 받을 경우 EU 전체에 판매 가능합니다.

※ 출처 Cleanroom Technology > Checklist to comply with EU Biocides Regulation 528/2012

https://www.cleanroomtechnology.com/news/article_page/Checklist_to_comply_with_EU_Biocides_Regulation_5282012/140349

※ 참고

ECHA > Hand disinfection . PT 1 harmonisation of exposure determinants for professional users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21664016/recom_1_hand_disinfection_pt1_en.pdf/18f123af-c462-4301-b8a4-02dbbf612094

ECHA > Guidance on the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2017년 1월)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15623299/bpr_guidance_vol_v_dbp_en.pdf/a57a2905-923a-5aa3-ea8-45f5c5503daf

그 외 국가별 규제

이는 유럽연합국 전체에 적용되는 EU 연합국 공통적 규제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실제로 각 국가에서 유럽 임의규격을 차용하여 강제화하거나 더 엄격한 국가규제를 별도로 두고 규제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뿐 아니라 나라별 규제검토도 필요합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은 유럽의 규정을 넘어서서 더 엄격한 수준의 제품안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몇몇 EU 회원국은 화학물질에 대해 별도의 추가적 혹은 더 엄격한 국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지침 이외에 지적재산권, 오염규정, 포장, 라벨링, 제품안전(유해염료사용 제한 등) 같은 각 국가별 국내업계기준이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뿐 아니라 나라별 규제검토도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현지 바이어 및 각 나라의 관할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에는 EU 국가별 공식 언어 지원 인력이 없어 문의하신 건에 대해 더 이상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참고

- European Commission > Trade Helpdesk <http://trade.ec.europa.eu/tradehelp/>
- ECHA > National Helpdesks <https://echa.europa.eu/support/helpdesks>

유 의 사 항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콜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distuse/prdSrchList.jsp

문 의 처

상기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 및 최신 현지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유럽 현지의 수입업체,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라별로 통용되고 있으나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띄고 있는 품질인증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업계 요구사항,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 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유럽지역본부 <http://www.kotra.or.kr/KBC/european/KTMIUI010M.html>

영국 런던 무역관, 스페인 마드리드 무역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프랑스 파리 무역관, 이탈리아 밀라노 무역관 등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http://eu.kita.net/>

- KOTRA trade doctor <http://tradedoctor.kotra.or.kr/bp/main/BPMAIN040M.html>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2020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 공고문 및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9091/info/ktrInfo.do?key=9093>

사업 문의 : 02-2164-0172~8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

(지원규모) 140개사 내외

(지원금액) 기업 당 100,000천원 한도(인증획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신청기간) 2020년 2월 3일(월) 09:00 ~ 2020년 2월 28일(금) 18:00 까지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인증 내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20년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https://zntech.go.kr/front/26/no/notice02_detail.do?sessionid=P29K7uS3W0174f0C52anYyb21X8Rtc055aM1H1011DAPf4Amcd6815DXwAay2smwse1_servlet_engine2?truedYy=&anccid=500905&busCd=C1&dlAnccmSnc=1&schdSe=MC05005&authSn=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지원내용: 해외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지원유형) 자유응모

(지원기간) 최대 1년 이내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75%이내 (최대 1.5억원) / 민감부담금 25% 이상

신청 및 접수기간: 2020.03.06.(금) ~ 2020.04.09.(목) 18:00까지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 > 중소기업수출지원 > 2019년 道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요약

<https://www.gg.go.kr/international-businessareas>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해외조달시장정보 > 고객지원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http://b2g.exportcenter.go.kr/service/customer/qna/qna_list.jsp

※ 주 의!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